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66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6684	이종배의원	2024.12.18.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2026.3.2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 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13787	허종식의원	2025.10.29.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01.) 상정, 축조심사
	2213820	안도걸의원	2025.10.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15.) 상정
	2213825	김주영의원	2025.10.3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214371	김원이의원	2025.11.19.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214520	주철현의원	2025.11.2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2026.3.2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 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14521	박지혜의원	2025.11.2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01.) 상정
	2214944	안호영의원	2025.12.5.	
	2216259	김주영의원	2026.1.22.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216860	이용우의원	2026.2.1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회부 (2026.3.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01.)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15.)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217798	김정호의원	2026.03.27.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회부 (2026.3.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01.)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15.)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4.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 법안소위(2026.05.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5. 19.)에서 위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5.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접속하기 위한 설비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접속설비의 중복 투자, 설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가 분산 관리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고,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 접속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효율화하고,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기사업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는 등 전기사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제2조, 제7조의4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개념을 신설하고,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허가기준으로 재무능력·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을 규정하며, 전기사업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취득인가 규정은 준용에서 제외함. 또한 전기사업자가 동 사업의 허가를 받는 것은 겸업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함.

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규정 마련 (제7조의4제6항~제9항)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준비기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없이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합병을 한 경우 등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

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사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제도 도입(제7조제2항·제3항 신설)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사업허가 취소 사유로 추가함.

4) 전기사업의 양수·분할합병 인가 대상 확대(제12조제1항제5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대상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추가하여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변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5)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 부여(제20조제1항)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우선 접속 대상으로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그 밖에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규정함.

6)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신고·인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함.

7)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추가(제25조제6항 제5호의3 신설)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함.

8)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추가(제50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및 같은 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9)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제5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전기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함.

10)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제100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및 공동접속설비를 벌칙·과태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제16조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절차와”를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절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

지,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6조, 제57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자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로, “제7조”는 “제7조의4”로, “허가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2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7조의4제6항”으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제9조, 제26조,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71조 및 제88조제1항에서의 “전기설비”를 포함한다)는 “공동접속설비”로, “전기사업용 전선로” 및 “송전선로”는 각각 “공동접속설비의 전선로”로 본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

지 아니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
7.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⑪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를 “허가권자에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호의2”를 “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를 “일부의 양수,”로, “분할이나 합병을”을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항제5호부터”를 “제1항제4호의2, 제5호부터”로 한다.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2장제2절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합병 인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

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6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

제5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 취소·사업정지 및 제7조의4제8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100조제1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에”를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를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의”로 한다.

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로, “전기사업을”을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로 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제3호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4조”를 “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전기사업자만”을 “전기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만”으로 한다.

제106조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를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 한다.</u>
<u><신 설></u> 7. ~ 21. (생 략)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 략) <u><신 설></u>	<u>6의3.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란 제7조의4제1항 에 따라 사업단위별로 재생에 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u> 7. ~ 21. (현행과 같음)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 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u>

<신 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
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⑧ -----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절차,-----

-----.

제7조의4(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
비건설사업의 허가 등) ① 재
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위별
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
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공동접속설비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

4. 그 밖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의 구성, 기능 및 건설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

설사업 및 그 사업자에 관하여
는 제5조,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2, 제
11조제1항 및 제3항(전기신사
업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의2, 제13조, 제22조, 제2
6조, 제57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71
조, 제72조, 제72조의2, 제87조
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
2조 및 제9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
등”은 각각 “재생에너지공동접
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전기사
업자” 및 “전기사업자등”은 각
각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
설사업자”로, “제7조”는 “제7조
의4”로, “허가권자”는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2조”
및 “제12조제1항”은 “제7조의4
제6항”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
비”(제9조, 제26조, 제61조제5
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
71조 및 제88조제1항에서의

“전기설비”를 포함한다)는 “공동접속설비”로, “전기사업용 전선로” 및 “송전선로”는 각각 “공동접속설비의 전선로”로 본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공동접속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

당한 사유 없이 공동접속설비의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한 경우

7.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업정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
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8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⑩ 전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은 제7조제5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⑪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
설사업자가 설치하는 공동접속
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
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
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
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
인수의 신고 등) ① -----

-----허가권자에 게-----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4의2. (생략)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제4호의3-----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

-----일부의 양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

경우

6. ~ 14.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⑥ · ⑦ (생략)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

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을-----

6.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제1항제4호의
- 2, 제5호부터-----

2.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 . 다만, 다

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 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 설>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 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합병 인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정

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4.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5.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6.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승계에 관한 정보

8. 제12조에 따른 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9.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

10.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11.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12.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권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4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u>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u> <u>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u> <u>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u> <u>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u> <u>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 한 사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 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 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요 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 -----.
1. ~ 5의2. (생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5의3.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 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

6. (생 략) ⑦ ~ ⑨ (생 략)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u><신 설></u> <u><신 설></u> 3.4. (생 략) ②·③ (생 략)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1. (생 략) <u><신 설></u>	6.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u> <u>2의3.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에 따른 과징금</u>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7조의4에 따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에 따른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및 제7조의4제8항</u>
--	---

2. ~ 15. (생 략) ② (생 략)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u>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u>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u>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u>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u> 조작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	<u>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u> 2.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벌칙) ① ----- ----- ----- -----. 1. <u>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를</u>----- ----- ----- 2. <u>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설비에</u>----- ----- ----- 3. (현행과 같음) ② ----- ----- ----- -----. 1. -----<u>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접속</u>
--	--

해한 자	<u>설비를</u>----- -----
2. <u>전기사업에</u>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u>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u> 유지 또는 운용업 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 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2. <u>전기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 동접속설비건설사업에</u>----- ----- <u>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재 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 업의 접속설비의</u>----- ----- -----
③ (생략)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併科)할 수 있다. 1. <u>제7조제1항을</u>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u>전기사업을</u> 한 자	③ (현행과 같음) 제101조(벌칙) ----- ----- ----- ----- -----. 1. <u>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 1항을</u>----- -----<u>전기 사업 또는 재생에너지공동접 속설비건설사업을</u>----- 2. ~ 7. (현행과 같음)
2. ~ 7. (생략) 제10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제103조(벌칙) ----- ----- -----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3의2. <u>제61조제1항</u>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 경공사를 한 자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u>제63조</u>에 따른 검사에 합격 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 용한 자. 다만, <u>제64조</u>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 는 제외한다. 4. <u>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 다)</u>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 7. (생략) 제106조(벌칙) <u>제61조제3항</u>을 위 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제61조제1항(제7조의4제5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 제105조(벌칙)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63조(제7조의4제5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u>----- -----. <u>제64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 4. -----<u>전기사업자 또는 재 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 업자만</u>----- ----- 5. ~ 7. (현행과 같음) 제106조(벌칙) <u>제61조제3항(제7조 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u>
---	---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우를 포함한다)-----

제108조(과태료) ① -----

1. 제22조제2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7. (현행과 같음)

② -----

1. 제9조제4항(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4항, 제26조(제7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2. · 3. (생 략) 4. <u>제61조제2항</u>을 위반하여 전 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를 한 자 ③ (생 략)	----- 2. · 3. (현행과 같음) 4. <u>제61조제2항(제7조의4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u>----- ----- ----- ③ (현행과 같음)
--	--